

부속서 III

한국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한국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한국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 (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한국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4항에 규정된 대로, 제11.9조제1항가호에 따라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지속 또는 갱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그리고
 - 마. **유보내용**은 유보된 조치의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제2항에 따라 그 유보항목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가호(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리고 제11.9조제1항다호를 조건으로,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조치** 요소에 적시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한국이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국민,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취하여진 그 조치에 대한 유보항목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유보항목으로 작용한다.
7. 부록 III-1은 양 당사국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제1항(예외)에 따른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기재한다.
8. 제10.2조(내국민 대우)가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의 비합치 측면에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한 부속서 I 또는 부속서 II 상의 유보항목은, 부속서 11-가(국경 간 무역)에 명시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할 제11.5조제1항(국경 간 무역) 상의 당사국의 의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유보목록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¹
3.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한국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한국은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

¹ 예를 들면, 파트너십 및 단독소유기업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예치금융기관의 법적 형태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두주는 그 자체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 간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달리 제한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²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각주는 엘살바도르와 파나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보험업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91조 및 제100조 보험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40조
유보내용	상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또는 투자거래자나 투자중개자의 2명의 직원만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하나의 은행 소재지에서 보험판매에 전적으로 할당된 창구 수, 단일 보험업자에 의하여 인수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은행판매비율, 은행이 판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종류, 그리고 대출의 대가로 보험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불공정 영업 관행과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방식을 제한함을 밝힌다.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4450호, 2016.12.20)</p> <p>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p> <p>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4079호, 2016.3.22)</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13738호, 2016.1.6)</p> <p>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4310호, 2016.12.2)</p> <p>선원법(법률 제11024호, 2011.8.4)</p> <p>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76호, 2016.2.3)</p> <p>유선 및 도선 사업법(법률 제13751호, 2016.1.7)</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921호, 2016.1.27)</p> <p>수상레저안전법(법률 제13754호, 2016.1.7)</p> <p>청소년활동 진흥법(법률 제14068호, 2016.3.2)</p> <p>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2829호, 2014.10.15)</p> <p>항공운송사업 진흥법(법률 제12655호, 2014.5.21)</p> <p>도로교통법(법률 제14356호, 2016.12.2)</p> <p>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882호, 2016.1.27)</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3694호, 2015.12.29)</p> <p>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3323호, 2015.5.18)</p> <p>건설기술 진흥법(법률 제13805호, 2016.1.19)</p> <p>원자력 손해배상법(법률 제13543호, 2015.12.1)</p> <p>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3374호, 2015.6.22)</p> <p>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325호, 2016.12.2)</p>

<p>낚시 관리 및 육성법(법률 제14240호, 2016.5.29)</p> <p>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3929호, 2016.1.27)</p> <p>전자서명법(법률 제12762호, 2014.10.15)</p> <p>변호사법(법률 제14056호, 2016.3.2)</p> <p>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79호, 2016.3.22)</p> <p>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03호, 2016.12.20)</p> <p>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3750호, 2016.1.7)</p> <p>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41호, 2016.12.20)</p> <p>공인중개사법(법률 제14334호, 2016.12.2)</p> <p>공인회계사법(법률 제14119호, 2016.3.29)</p> <p>관광진흥법(법률 제13958호, 2016.2.3)</p> <p>궤도운송법(법률 제14088호, 2016.3.22)</p> <p>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616호, 2016.11.29)</p> <p>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138호, 2016.3.29)</p> <p>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1.19)</p> <p>세무사법(법률 제13796호, 2016.1.19)</p> <p>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법률 제13852호, 2016.1.27)</p> <p>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908호, 2016.1.27)</p> <p>우주순해배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p> <p>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법률 제13097호, 2015.1.28)</p> <p>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6.23)</p> <p>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304호, 2016.7.5)</p> <p>입목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03호, 2012.2.10)</p> <p>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률 제13768호, 2016.1.19)</p> <p>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841호, 2013.5.28)</p>
--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80호, 2016.3.22)</p> <p>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242호, 2016.5.29)</p> <p>주택법(법률 제14344호, 2016.12.2)</p> <p>공동주택관리법(법률 제14093호, 2016.3.22)</p> <p>항공법(법률 제14114호, 2016.3.29)</p> <p>해운법(법률 제14117호, 2016.3.29)</p> <p>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3914호, 2016.1.27)</p>
유보내용	<p>한국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1-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제적인”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러한 인이 외국의 영역에서 공급받은 어떠한 그러한 서비스도 고려되지 아니한다.</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p>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은행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금융지주회사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유보내용	<p>1.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은, 그러한 금융기관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³”인 경우에 한하여, 한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다.</p> <p>2. 투명성 목적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서 기술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에 의한 소유권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이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추가적인 승인기준을 적용한다. 나. 자연인은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 주요 사업이 금융서비스가 아닌 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체는 한국 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4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다만, 그 기업체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 행사 능력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의 비율을 10퍼센트까지로 증가시킬 수 있다. 라.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상업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 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체 또는 관련 금융기관의 최대 주주이거나 그 금융기관의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³ “국제적으로 인정된 금융기관”은 국제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등급으로 평가된 금융기관, 또는 한국의 관련 규제당국이 수용 가능한 대체방식에 의하여 그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입증된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은행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제58조</p> <p>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24조의9 및 부칙</p> <p>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6-45호, 2016.12.20) 제5조의4 및 제11조</p>
유보내용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 한국에서 각각의 지점을 설치하려면 개별 면허가 필요하다. 외국의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자회사인 은행의 지점은 그러한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78조, 제373조, 제379조 및 제386조
유보내용	한국거래소 및 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기타 대체거래소만이 한국에서 증권 또는 파생상품 시장을 운영할 수 있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166조 및 제294조부터 제323조까지
유보내용	한국예탁결제원만이 한국에서 발행된 상장 및 비상장 증권의 예탁결제기관으로서 또는 한국의 예탁자 계정간의 그러한 증권의 이전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323조의2, 제323조의3, 제323조의10 및 제378조
유보내용	<p>한국예탁결제원 및 한국거래소만이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또는 거래되는 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한국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받은 중앙청산기구만이 증권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투자서비스의 청산 및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184조
유보내용	비전문 투자자(일부 전문투자자 ⁴ 를 포함한다)가 외화표시증권 및 외국 증권시장이나 외국 파생상품시장의 장내파생상품을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에서 면허를 받은 투자중개자를 통하여 거래한다.

⁴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3)의 기관투자자는 제외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은행법(법률 제14242호, 2016.5.29) 제62조 및 제63조</p> <p>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205호, 2016.5.31) 제25조 및 제26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4458호, 2016.12.20) 제65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556호, 2016.10.25) 제65조</p>
유보내용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들여와 한국에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국내 지점에 의하여 조달될 자금 또는 대출 금액을 결정할 목적으로 사용된다.</p> <p>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의 한국 내 지점은 영업기금을 들여와 한국에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금은 그러한 국내 지점이 수행하는 업무로부터 발생 가능한 위험을 관리할 목적으로 사용된다.</p> <p>「은행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목적상, 그러한 지점은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그 은행 또는 그 금융투자회사의 실체와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 간주된다.</p>

10.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14457호, 2016.12.20) 제7조</p> <p>상호저축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7.31) 제6조</p> <p>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4127호, 2016.3.29) 제5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2014.12.30) 제355조</p> <p>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16호, 2015.3.11) 제5조</p> <p>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2016.3.2) 제9조</p> <p>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2014.12.30) 제254조, 제258조 및 제263조</p>
유보내용	<p>다음 유형의 업무는 외국의 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지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신용협동조합 나. 상호저축은행 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라. 외화 및 원화자금중개회사 마. 신용정보회사 바. 일반펀드관리회사 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그리고 아. 채권평가회사

1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4132호, 2016.3.29) 제30조
유보내용	한국에서 특정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금융기관은 자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다.

1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14122호, 2016.3.29)</p> <p>중소기업은행법(법률 제13453호, 2015.7.31)</p> <p>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4134호, 2016.3.29)</p> <p>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481호, 2016.12.27)</p> <p>수산업협동조합법(법률 제14242호, 2016.5.29)</p>
유보내용	<p>한국은</p> <p>가. 다음 금융기관(통칭하여 “정부지원기관”)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3) 한국주택금융공사 4)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5) 수산업협동조합 <p>나.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특별대우를 부여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부지원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정부지원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 2) 유사한 상태에 있는 비정부지원기관보다 자본 대비 더 큰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 3) 정부지원기관이 입은 손실의 보전 4) 자본, 잉여,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공공자산 및 특정조세의 면제

1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4047호, 2016.3.2) 제9조
유보내용	한국 원화 현물환 거래의 은행 간 중개업은 그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의 두 개의 중개업자로 제한된다.

제2절

1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관련의무	국경 간 무역(제11.5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p>한국은, 한국 내 자연인 또는 한국에서 설립된 법인이 부속서 11-가에 기재되지 아니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를 구매할 법적 의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외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공급된 어떠한 “강제적인” 제3자 보험서비스도 고려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그러나, 그 요구되는 보험이 한국에 설립된 보험업자로부터 구매될 수 없는 경우, 한국의 영역 밖에서 공급되는 서비스도 법적 의무의 충족 여부에 고려될 수 있다.</p>

1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없음
유보내용	한국은, 민영화와 관련한 정부 소유 또는 정부 지배 기관들의 의무 및 배상 책임에 대한 계속적 보증 또는 한시적 추가 보증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관들의 정부 보증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 및/ 또는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1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12947호, 2014.12.30)
유보내용	한국은 외국 투자자에 의한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소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관련 기관의 주식 보유를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한국은 (1) 공모의 시점에서 외국인의 소유지분 보전을 보장하고, (2) 공모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동종의 상황에서 한국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 금융기관의 접근을 확실히 할 것을 보장한다.

1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한국주택금융공사법(법률 제14134호, 2016.3.29) 주택법(법률 제13805호, 2016.1.19)
유보내용	한국은 주택금융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투명성 목적상, 한국은 주택청약저축계좌와 같은 주택계정을 보유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금융기관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부록 III-1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불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 조치

다음의 조치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불합치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 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4조와 불합치하다고 해석되지 아니할 것이다.

- (1) 한국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 영위할 수 있다. (「보험업법」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보험업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6조)
- (2) 한국의 거주자가 외국의 거주자로부터 공급받은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원화로 지급을 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및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 (3) 한국 내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을 해주도록 요구된다. (「한국은행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2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및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 (4) 순매각 포지션의 합계 또는 순매입 포지션의 합계 중 더 큰 값에 의하여(약식 방법) 계산되는 외국환은행의 종합순노출 포지션은 전월말 총 자기자본의 50퍼센트로 제한된다.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의2)
- (5) 유가증권 신용공여는 신용한도금액과 수익의 운영에 대한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 투자거래자 또는 투자중개자는 유가증권의 매도와 매입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6) 개별 신용카드 소지자에 대한 대여액은 상한이 제한될 수 있다. (「여신전문 금융업법」 제24조)
- (7) 한국에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은 관련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업무만을 영위할 수 있다. (「은행법」 제27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8) 금융기관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금지된다. (「은행법」 제38조, 「보험업법」 제105조)
- (9) 한국의 비거주자는 한국에서의 실체적인 이용만을 위하여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전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부터 제7-10조까지, 그리고 제7-36조부터 제7-39조까지)
- (10) 한국은 예금 이자율, 대출 이자율, 그 밖의 이자율, 예금 만기 및 관련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은행법」 제30조,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제9조)

다음의 조치는 제11.10조제1항(예외)에 해당되고, 따라서 제11.2조(내국민 대우)는 한국이 그 조치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조치 또는 관련법의 수정, 개정 또는 변경은 원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10조제1항의 범위에 해당될 것이다.

- 가. 외국보험사 지점의 영업기금은 자본금으로 간주될 것이며, 본점의 자본금은 그려한 지점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액 또는 대출하려고 하는 대부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아니할 것이다. (「보험업법」 제9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4조)
- 나. 외국보험사의 한국 내 지점은 한국에서 체결된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총계에 상당하는 자산을 한국 영역 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업법」 제75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5조의2)